

명예훼손소송에 대한 미국 언론사들의 대항전략

스티브 와인버그

스티브 와인버그(Steve Weinberg) 씨는 콜롬비아와 미주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Investigative Reporters & Editors 의 편집장이다.

.....편집자주

원고에 대항하여 언론사가 반소

수백만 달러짜리의 명예훼손소송이 극적으로 증가하는데 자극을 받아서, 전국의 언론사들은 이러한 소송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전략들을 계획적으로 개발해오고 있다. 이러한 전략들은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도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정 보도하는 방법으로부터, 믿을만한 정보원이 구술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방법까지 다양하다. 여러 사건들에서, 이 방법들은 피고가 명예훼손소송에서 쉽게 승소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중요한 목적은 잠재적인 원고들이 소송하는 것을 단념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비록 명예훼손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요될 지 모르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다.

원고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개발된 수십 가지의 전략들 중에서 반소가 아마 가장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일 것이다. 금년 1월 6일에 웨스트·버지니아의 찰스톤에 있는 가제트(Gazette) 지는 『전직 행정관이 명예훼손소송을 취하였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가제트 지가 반소 전략으로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그 사건은 1978년에 동지의 제임스·허트 기자가 보호관들에 관한 기사를 써서 보도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기사에서, 허트 기자는 특히 한 보호 관찰관을 교활성의 표본이라고 보도했다. 1979년에 그 보호 관찰관은 가제트

지가 그의 고향인 군에서 그를 모욕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20 만 달러의 손해보상금을 요구했다.

동지의 발행인인 W. E. 칠턴 3 세는, 화를 내고 펄펄 뛰면서, 「이 소송은 나에게 법적인 비용손실을 강요할 것이고, 담당기자에게는 시간적인 손실을 강요할 것이다」 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 신문이 팔짱을 끼고 앉아서 수수방관하지 않게 할 것이고, 이유 없는 소송이 대답 없는 상태로 머물러 있게 하기로 결심했다」 고 했다.

칠턴 씨는 「원고가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를 상대로 제기할 생각이 없고, 그의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하겠다」 고 말하면서, 가제트 지의 고문법률회사에 이를 명령했다.

그 결과, 원고는 동지가 반소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 소송을 취하하는 데 동의했다.

칠턴 씨만이 언론이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고 믿고 있는 유일한 언론인이 아니다. 마이애미 · 헤럴드 지의 편집인으로 있던 존 · 맥멀란 씨는 지난 여름 은퇴하기 전에, 헤럴드 지의 칼럼에 CBS 방송국의 『60 분 (60 minutes)』 프로그램이 칼 · 갤러웨이 씨를 상대로 반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썼다. 갤러웨이 씨는 사기적인 보험청구에 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의 손해배상청구가 궁극적으로 배심에 의해서 기각되었다.

맥멀란 씨는 그의 6 월 2 일자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만약 갤러웨이 씨 자신이 CBS 방송국에 대한 소송을 하면서 진실에 대한 부주의한 무시 (reckless disregard)를 입증하고 있지 않았다면, 반소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그 소송사건이 『60 분』의 명성을 훼손했고 또한 그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수십만 달러의 비용을 소비했는데, 그 취하가 CBS 방송국을 위해서 어떤 의미의 승리를 안겨 주었는가? 어떤 실질적인 근거 없는 주장으로 기이한 판결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반소함으로써 언론이 법전을 바꾸기 시작한 시기이다. 」

맥멀란 씨는 그 법원의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만족스럽게 인용했다.

「우리들은 변호사들이 이미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들을 법정으로 끌고 오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들은 변호사들이 유력한 증거가 인멸되었을 때, 소송을 지속할 수 있고 또한 사법절차에 호소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기를 요구한다. 」

맥멀란 씨와 다른 사람들이 바론(Barron)사건에서 발견한 밝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융통성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되는 이유가 있다. 첫째, 비록 그 사건이 피해매체가 연루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명예훼손에 관한 사건이 아니었다. 둘째, 바론이 받은 5만 달러는 단지 전체소송비용중의 극히 일부분이었다. 셋째, 그 법원은 그 판결의 제한적인 성격을 다음과 같이 지지했다.

「지방법원이 이 소송의 불성실한 지속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승소한 피고를 위한 변호사비용을 재정하는데 여유 있는 산정을 하지 않았다 」

미네아폴리스 · 스타-트리뷴(Minneapolis Star & Tribune Company) 사가 연루된 회의적인 반소전략의 또 다른 사례가 인용되었다. 1981년에 미네소타의 한 판사는 어떤 명예훼손소송이 「그럴싸하고 사실무근」 이라고 판결한 다음에, 원고는 동사에게 소송비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미네소타 주 대법원은 동사가 지불한 전체 변호사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원고에게 없다고 판결했다.

언론사의 반소는 원고를 당황케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소는 예방적인 수단으로서 유망하게 여겨진다. 이 글을 위해서 실시된 조사는, 비록 매체측 변호사들이 일반적으로 반소에 대해서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몇 개의 잠정적인 반소들은 물론 이러한 종류의 몇 가지 소송절차를 조사했다. 한편 이 전술은 법률전문지와 저널리즘전문지를 통해서 논의되어지고, 주장되어지고 있다. 뉴스·미디어-로우(The News Media & The Law)지는 1981년 6~7월 호에서 반소에 대한 쟁점을 다루었다. 저널리즘·쿼터리 (Journalism Quarterly)지는 1982년 겨울 호에서 이 전략을 특집으로 취급했다.

명예훼손방어 대책센터 (Libel Defense Resource Center)에 의한 주간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54개 재판 관할 구역들 가운데 적어도 32개 재판 관할 구역들이 가치 없는 명예훼손주장에 대해서 의미 있는 구제책을 잠정적으로 제공할 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미 특별히 명예 훼손사건에서 구제책을 인정하고 있고, 단지 3개의 재판 구역들만이 명예훼손소송의 피고들에게 어떤 구제책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동 센터에 의해 작성된 조사결과는 「명예훼손에 관련된 더 많은 매체측 피고들이 원고들의 악의적인 고소, 사법절차의 남용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항해서 그들의 반소를 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고, 또한 적어도 원고들과 대항해서 싸우는데 소요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데스·머니즈·리지스터 (Des Monies Register)지는 다른 전략들을 채택하고 있다. 아마도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동지가 부당하다고 믿는 명예훼손소송에 대한 해결을 거부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것은 타임 사가 수년동안 추구해 온 정책이다. 리지스터 지의 자문 위원인 바바라·맥크 씨는 「우리들은 아이오아 법정을 통해서 그 의사를 밝혔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우리들은 결코 명예훼손소송에서 패소한 적이 없고, 또 그렇게 할 의도도 없다. 그리고 원고가 변호사를 전임으로 고용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들은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말하지 않는다.」

이러한 강력한 전략을 위한 좋은 사례는 저널리스트인 로버트·H·펠프즈(Robert H. Phelps)와 변호사인 E. 더글라스·헤밀턴(E. Douglas Hamilton)에 의해서 1966년에

출판된 『Libel ; Rights, Risks and Responsibility』란 교과서에 기술되어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록 법정 밖에서의 해결이 비용을 절감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소송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가치 있을지도 모른다. 덧붙이면, 대항을 하지 않고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뉴스 매체는 곧바로 법조계에서 설득당하기 쉬운 상대로 인식되고, 문제해결을 거절하는 매체들보다 더 많이 피소될 것 같다. 」

대항하겠다는 결정은 소송이 되어 사전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 원고를 당황하게 할 가능성이 일어난다. 리지스트 지의 맥크 씨는 「우리들은 선서증언과정에서 피고를 아주 오랫동안 선서하도록 한다」고 발한다. 매체측 변호사들은 원고에게 관련된 일기, 사진들, 개인수표 등을 제시하라고 요구할 지도 모른다. 그 절차는 원고의 일상생활을 매우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

정보원 사용억제도 피소를 방지

다른 매체들과 함께, 리지스터 지도 역시 명예훼손소송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믿을만한 정보원의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잠재적인 원고들은 믿을 만한 정보원에 의한 기사가 명예훼손사건에서 매체사가 방어하기 어려울 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1982년에 웨인 · 오버백 (Wayne Overbeck)과 리크 · 풀랜(Rick Pullen)에 의해서 저술된 교과서인 『Major Principles of Media Law』는 그 문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몇몇 법원들은 저널리스트 등이 그들의 정보원을 밝히거나, 정보원이 없다는 추정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몇몇 주들에서는, 저널리스트들은 그들의 정보원을 밝히던가 또는 그들이 그 외의 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명예훼손소송에서 패소하던가 하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실제로, 만약 기자가 그의 뉴스 정보원을 밝히기를 거부할 경우에 몇몇 명예훼손보험증권은 무효화된다. 」

전직 기자이고 리지스터 지의 자문 위원인 맥크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리지스터 지는 믿을 만한 정보원의 사용을 앞으로도 계속하는 한편, 지금 우리들은 그들을 보호할 것인지 보호하지 않을 것인지에 정보원과 이해를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들은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만약 중요한 정보원이 비밀을 털어놓고, 또 그 정보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된다면, 우리들은 증언에서 그 이름을 밝혀야 하고 또는 우리들 스스로가 정보원을 증언할 지도 모른다. 만약 정보원이 노출되기를 거절한다면, 기자는 돌아와야만 하고, 그 문제를 편집인들 그리고 법률 자문 위원들과 의논해야만 한다.’」

로스 · 앤젤리스 · 타임즈(Los Angeles Times) 지의 경우를 보면, 약간의 기자들은 믿을만한 정보원들이 선서구술서에 서명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예를 들면, 타임즈 지의 빌 · 파르 기사는 만약 신문이 피소될 경우에만 사용된다는 조건으로 3명의 믿을만한 정보원들로부터 선서구술서를 받아두었다고 말한다. 그 선서구술서는 사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신뢰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포함하고 있다. 선서구술서를 이용하고 있는 파르 씨와 다른 기자들은, 만약 잠재적인 원고들이 이러한 선서 구술서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들은 더 적게 소송할 지도 모른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언론인의 보도 전 신중한 태도 요구

저널리스트들은 믿을 만한 정보원의 사용뿐만 아니라 보도 또는 방송 전에 말해지고 작성되는 것들이 역시 좀더 신중해져야 함을 배웠다. 그들은 조사보도중의 불확실한 풍문, 정보원의 근거 없이 비난하는 대답, 카메라에 의한 잠복인터뷰, 그리고 내적 비망록 등이 명예훼손소송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는 냉혹한 풍토를 배웠다. 공표 전에 검토하는 일반적인 상식은 초안 된 것을 그대로 공표해서 명예훼손소송을 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만약 텔레그래프(Telegraph) 지의 두 기자들이 한 지방건축업자에 관해 언급된 공표금지의 비망록을 기사화하지 않았다면, 그 신문은 920 만 달러짜리 재판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동지는 결국 원고들에게 약 150 만 달러를 지불했다). 이 사례는 아마 가장 광범위하게 보도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을 위해서 실시된 사조는 캘리포니아, 알라바마, 그리고 워싱턴 특별구역에 있는 매체측 피고들을 포함한 다른 것들을 파헤쳤다.

모빌 · 오일 사 (Mobil Oil Corporation)가 연루되어 있는 워싱턴 · 포스트(Washington Post) 지의 제트릭 · 킬러 기자의 사건조사보도 가운데 있는 불확실한 풍문이 모빌 사의 윌리엄 ·

테발라리어스 사장에 의해서 명예훼손으로 피소되었을 때 법적인 쟁점이 되었다. 스티븐 · 브릴 씨가 American Lawyer 지에 게재한 이 사건에 관한 분석은 테발라리어스 씨의 변호사가 식당회합에서 자유기고가와 나눈 킬러의 대화와 조사보도에 연루된 정보원을 강조한 부분을 언급했다. 「만약 어느 누가 테발라리어스의 금고를 ‘살살이 뒤킨다면’, 그것은 대단히 멋있을 것이다」란 말이 자유기고가의 노트에 기록되어 있었다. 이 노트는 그 후에 원고의 수중에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존 · 파울 · 존스(John Paul Jones)는 1976년에 『Gathering and Writing the News』란 그의 교과서에서 이러한 문제를 예견했다. 그는 「조용히 하라」고 권고했다. 조사보도기자는 그가 취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는 미묘한 사건을 다루는 다른 조사자들과 마찬가지로 입이 무거워야 한다. 첫째, 그의 조사가 성과 없는 것으로 변할지도 모른다. 둘째, 사건에 관한 그의 전개과정에서의 불확실한 풍문은 그에게 대항하는 것으로 사용될 지도 모른다. 」

명예훼손소송의 기타 방지전략

반소, 문제해결을 거부하는 것, 믿을 만한 정보원을 사용할 경우의 사전주의, 공표하기 전에 함구할 것, 이러한 것들은 널리 실행되고 있는 많은 명예훼손소송의 방지 전략들 중에 아주 중요한 4 가지 형태들이다. 이 밖의 다른 것들은 기자들, 편집인들 그리고 매체측 변호사들 뿐만 아니라 관련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독서로부터 발췌된다.

■ 불확실한 종류의 기사들과 불확실한 말들은 잠재적인 명예훼손소송의 원고들을 위한 적신호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말과 기사들에 관한 대부분의 목록들은 범죄, 직업적인 무능력, 음란행위(특히 여인의 성적 음란성), 사법절차, 그리고 어린이 등으로 구성된 관련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브루스 · 샌포드(Bruce Sanford) 변호사에 의해서 알파벳순으로 저술된 『Synopsis of the Law of Libel and the Right of Privacy』는 「불량제품(adulteration of Products)」으로 부터 「악한(villain)」까지 약 100 단어들과 표현들을 알파벳순으로 정리한 목록을 수록하고 있다.

■ 공식적인 공공문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면책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정보를 점검하라. The Associated Press Stylebook and Libel Manual 은 법원에 제소된 어떤 사건이든 명예훼손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면책된다고 가정하는 저널리스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함정들을 논하고 있다. 작년에 AP 통신사의 간부들과 가진 세미나에서, 자문위원인 디크 · 윈필드(Dick Winfield) 씨는 시민들의 불만을 보도하는 것은 위험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점을 주의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그 불만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저널리스트가 작성한 기사가 공정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완벽하게 분명히 함으로써 위험부담을 줄여야 한다. 둘째, 여러분들은 기사가 단지 불만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어떤 행동이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셋째, 여러분들은 공정한 취급을 했다는데 중점을 두고 말해야 한다. ...만약 당사자가 AP 통신이 그에게 공정하다는 인상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

■ 공표된 모든 문제를 미리 입증하라. 문체에 관한 워싱턴 · 포스트 지의 데스크 · 북에 명예 훼손적인 언사의 재공표와 재방송은 최초의 명예 훼손적 언사보다 명예훼손법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차이가 없다.

■ 사회적 또는 다른 상황들을 예증하기 위한 불확실한 사진의 사용을 피하라. 방송(Broadcasting)지의 최근 호에서, 펜실바니아 주립대학 저널리즘 학과의 리처드 · 라빈스키 교수는 「알코올중독 환자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술집에 있는 단골 손님들의 전체적인 사진을 방송하는데 대해서 경고했다.」 이러한 안전지침은 명백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데스 · 모니즈 · 러지스터지의 자문 위원인 체크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불확실한 사진의 사용은 항상 일어나고 있다. 나는 조간신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진들을 볼 때 입맛을 잃어 버린다. 」

■ 만약 잘못을 저질렀다면, 즉시 완전한 정정 기사를 내거나 정정 방송을 하라. 최소한으로 즉각적인 정정보도는 원고가 천문학적 징벌적 손해보상금을 적게 받도록 하는데 기여할지도 모른다. 최대한으로, 정정보도는 오해하고 있는 사람의 분노를 누그러뜨려서 소송이 결코 제기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확실한 보도와 편집을 통해서 명예훼손 소송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한편, 약간의 저널리스트들은 역시 명예훼손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의회와 법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 제안들은 많고, 그것들의 대부분은 실제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 제안들은 50 개의 각주에 있는 명예훼손법의 번덕스러움을 제거할 지도 모르는 국가법을 포함하고 있다. 즉 그 내용은,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원고들이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는 대부분의 경제적 동인의 제거, 공공관심사에 관한 보도에 의해서 야기된 명예훼손소송의 금지 그리고 승소한 피고의 소송비용을 원고가 자동적으로 지불할 것 등이다.

저널리스트들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명예훼손소송을 예방하는 한가지 방법은 명예훼손이 될 만한 사건의 취재 범위에 의한 개선책이다. Investigative Reports & Editors 지의 고문변호사인 애드워드 · 드러니 씨는, 지난 6 월에 개최된 그 그룹의 전국회의에서 명예훼손사건에 관한 매체의 취재범위가 「현실적인 명예훼손에 비해서 저널리즘이 불완전하다는 판단을 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피해를 유도하고 있다」 고 말했다. 드러니 씨는 테발라리어스(Tavoulaareas) 사건의 취재범위를 예로 들면서, 약간의 기자들은 명예훼손법이 피고측인 언론사로 하여금 그의 기사가 가장 높은 저널리즘적인 기준들과 일치함을 입증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매체의 취재범위에 대해 비판적인 드러니 씨와 다른 사람들은 명예훼손적 보도와 결함 있는 보도 사이의 분명한 차이점을 꼬집어 내지 못하는 것이 잠재적인 원고들로 하여금 제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믿고 있다. 나아가서, 잠재적인 배심원들은 그들이 매체측 피고들에게 항상 불리한 평결을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오해를 받게 될 것이다.

리지스터 지의 맥크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들이 우리들 자신의 명예훼손문제에 관해 서 쓰고 있을 때, 우리들이 법 또는 저널리즘의 윤리에 관해서 공중에게 알리기 위해서 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우리들의 윤리 기준들이 법적 기준들보다 더 제한적이나, 우리들은 그 점을 공중에게 잘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